



제 429회 국회(정기회)
제 11차 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외국인 아동 초등학교 입학 안내 등〉

■ 김용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793호)

2025. 12.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외국인 아동 초등학교 입학 안내 등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용태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10. 29.

다. 회 부 일 : 2025. 10.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의무교육을 받아야 할 아동에게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취학 의무의 이행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 국적의 아동은 취학통지서 발급 대상이 아닌 관계로 취학 통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교육받을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도달한 자를 조사·관리하도록 하고,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부여받은 외국 국적 아동의 보호자에게도 입학을 안내하도록 하여 교육의 기회를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외국인 아동 초등학교 입학 안내 등

-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에 외국인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 지원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지자체장이 초등학교 입학연령 외국인 아동의 현황 조사·관리 및 입학 안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u>제13조의2(외국인등에 대한 입학 지원)</u>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17호다목 및 라목의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있는 아동(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의 초등학교 입학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관내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해당하는 외국인등의 현황을 조사하고 관리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의 보호자에게 초등학교 입학을 안내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입학 연령에 도달한 외국인등의 조사·관리, 입학 안내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대한민국 국민의 초등학교 취학 절차를 규율하고 있음. 보호자는 아동이 6세가 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취학시키는 의무를 가짐¹⁾.

이를 위해 읍·면·동의 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해 입학 대상 아동을 기재한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하고, 12월 20일까지 보호자에게 취학통지를 하도록 정하고 있음²⁾. 또한 입학 기일이 지나도 입학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학 독촉 및 경고 등의 절차를 두고 있음.

반면,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는 동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상 필요한 시책 마련 등 노력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외국인 아동은 초등학교의 장에게 문의를 거쳐 입학을 신청할 수 있을 뿐³⁾, 별도의 취학통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임.

1)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 의무) ①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취학아동명부의 작성 등) ① 읍·면·동의 장은 매년 10월 1일 현재 그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6세에 달하는 자(법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라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취학 중인 자는 제외한다)를 조사하여 그 해 10월 31일까지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입학연기를 신청하여 취학아동명부에서 제외된 자는 포함하여야 한다.

제17조(취학의 통지 등) ① 읍·면·동의 장은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입학할 학교를 지정하고 입학기일을 명시하여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2월 20일까지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통지를 하여야 한다.

3) 「초·중등교육법」

제28조의2(다문화학생등에 대한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아동 또는 학생(이하 “다문화학생등”이라 한다)의 동등한 교육기회 보장 등을 위해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외국인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 지원을 위한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초등학교 입학 연령의 외국인 아동에 대해 현황을 조사·관리하며 입학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구체적인 입학 안내의 내용을 정확히 예상하기는 어려우나, 최근 경기도에서 시범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입학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형태일 것으로 예상됨.

< 외국 국적 학생 대상 초등학교 입학 안내 시범사업 개요 >

- 경기도청-경기교육청 협업으로 외국 국적 학생 대상 초등학교 입학 안내
 - (경기도청) 2025년 1월, 경기도 내 21개 지자체가 관내 초등학교 취학 연령의 외국 국적 학생 가정에 입학 안내문 발송
 - (경기교육청) 2025년 3월, 경기도교육청 관내 초등학교에 경기도청에서 입학 안내문을 발송하였음을 안내하고 외국 국적 학생이 입학 안내문에 따라 학교 입학 희망 시 입학 지원하도록 요청

자료: 교육부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 또는 학생
 2.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인면서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아동 또는 학생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이하 이 조에서 “귀국학생등”이라 한다)의 보호자는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갈음하여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의 장에게 귀국학생등의 입학 또는 전학을 신청할 수 있다.

1.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
2.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아동 또는 학생
4.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5. 그 밖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

참고로, 개정안에서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 아동은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있는 자를 의미함. 외국인등록번호는 외국인이 입국 후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거나 국내에서 출생한 경우 부여되며, 국내거소신고번호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가 거소신고를 할 때 부여되는 번호임.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25년 9월말 기준 2026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대상으로 추정되는 6세 외국 국적 아동 수는 외국인등록을 한 8,281명, 국내거소신고를 한 268명 등 8,549명으로 집계됨.

-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취학 관련 안내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아동과 보호자에게 초등학교 입학 절차의 편의성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또한 입학 연령 외국인 아동의 현황을 조사·관리함으로써 관련 제도 개선 및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아울러 이는 우리나라가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제28조에서 규정한 초등교육의 의무성과 모든 아동의 교육 정보 접근 보장과도 부합함⁴⁾.

4)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rticle 28

1. States Parties recognize the right of the child to education, and with a view to achieving this right progressively and on the basis of equal opportunity, they shall, in particular:

(a) Make primary education compulsory and available free to all;

(b)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different forms of secondary education, including general and vocational education, make them available and accessible to every child, and take appropriate measures such as the introduction of free education and offering financial assistance in case of need;

- 다만, 개정안의 심사 과정에서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개정안은 외국인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나, 해당 번호는 체류기간 만료 후에도 소멸하지 않아 이들에 대한 입학 지원 및 안내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둘째, 개정안은 지자체장의 현황 조사·관리 및 입학 안내를 재량 사항으로 두고 있음. 이에 따라 각 지자체의 의지와 여건에 따라 실제 이행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음. 그 결과 지역 간 외국인 아동 지원 수준의 격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개정안 관련 교육부 의견]

○ 교육부: 이견없음

- 「UN 아동권리협약」 및 「초·중등교육법」에서 외국 국적 아동도 교육기회를 보장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에 따른 취학 안내를 받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한국 국적 아동과 달리, 초등학교 입학 안내 절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외국 국적 아동(외국인등록번호 및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있는 아동)의 경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도래하더라도 입학 안내를 받지 못해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못하는 사례 발생
-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초등학교 취학 안내를 할 때 외국 국적 아동에게 입학 안내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될 경우 외국 국적 아동에 대한 교육 기회가 두텁게 보장될 것으로 기대됨

문 의 처

02)6788-5184

-
- (c) Make higher education accessible to all on the basis of capacity by every appropriate means;
 - (d) Make educational and vocational information and guidance available and accessible to all children;**
 - (e) Take measures to encourage regular attendance at schools and the reduction of drop-out rates.